

#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28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92. 6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부산직할시사하구실·과직제규칙 제3조 실·과 분장사무의 조정에 따라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업무이관 사항 개정

## 2. 개정내용

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제7조 2항 “간사는 가정복지계장”을 “간사는 체육청소년계장”으로 한다.

## 3. 관계법규

부산직할시사하구실·과직제규칙 제3조(분장사무표)

##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 조 제 2 항중 “간사는 가정복지계장”을 “간사는 체육청소년계장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(안)
제 7 조(실무위원회간사) ① (생략) ② <u>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.</u>	제 7 조(실무위원회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간사는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.</u>